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위성곤의원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98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위성곤의원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598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검토의견	6
1. 총괄	6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9
3. 주요내용 검토	11
가. 총칙(제1장) 관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1
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제2장) 관련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14
다. 목조건축 활성화 지원(제3장) 관련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27
라. 건축용 목재제품(제4장) 관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32
마. 보칙(제5장) 관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34
바. 벌칙(제6장) 관련(안 제28조 및 제29조)	40

I. 위성곤의원·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598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위성곤의원·권영진의원 등 26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2.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 자재로서 가치가 큼. 특히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 또한 미비하여 실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제한적임. 또한,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로 인해 목조건축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

화와 관련 산업은 발전을 저해받고 있으며, 탄소저감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건축용 목재제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목조건축과 목재산업에 관한 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목조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목조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와 시공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품질 기준 개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목조건축물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게 한다(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산림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안 제14조).

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도입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등도 공동주택 연면적의 일부분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1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고 관련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6조).

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

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안 제17조).

자. 국가기관등은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8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가기관등과 국민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을 목조건축물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대상 사업 시 목조주택으로 건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19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에게 목조주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목조주택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설계도를 고시하여야 한다(안 제20조).

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모든 건축물에 목재로 제작된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건축용 목재제품의 연간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건축용 목재제품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21조).

파.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서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정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다양한 조세 감

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안 제26조).

II. 검토의견

1. 총괄

목재는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건축자재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철근·콘크리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타 건축재료 대비 제작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점¹⁾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따라서 목재를 이용한 건축은 산림부문 탄소저장량을 증진할 수 있고,²⁾ 철근·콘크리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타 재료를 목재로 대체하여 건축·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저감³⁾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목구조 vs 철근콘크리조 탄소발생량 비교 】

구분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비교
CO ₂ 발생량	52.26tCO ₂ eq	106.06tCO ₂ eq	- 구조, 규모, 단열성능 동일 가정 - 연면적 189m ² 기준
비율(%)	1.00	2.03	

※ 자료: 산림청

- 1) 목재는 동일 부피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가 알루미늄 대비 1/791, 철강 대비 1/191로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소재임(자료: 국토교통부).
- 2) 목재는 나무가 성장하는 동안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63m²(19평) 목조주택 한 채는 약 17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승용차 18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임(자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배출량 평가).
- 3) 건조된 목재 무게의 50%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UN 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에 국산목재제품(Harvested Wood Products, HWP)의 탄소저장량은 국가 감축실적으로 산정됨(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뉴질랜드), 목재이용 법률 및 기본방침의 대상을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는(일본) 등 목조건축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2 참조).

한편, 프랑스는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상트르 아쿠아티크’, ‘아레나 샹 드 마르스’ 등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음.

【 2024 파리올림픽 목조건축물 경기장 】

상트르 아쿠아티크 (Centre Aquatique)	아레나 샹 드 마르스 (Arena Champ-de-Mars)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파리올림픽 목조건축이 특별한 이유, 사진 출처: OLYMPICS.COM)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이 미비하여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목조건축 관련 기술 발전 및 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통한 선도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토교통부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⁴⁾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환경 개선 및 관련 건축산업 육성 등을 위해 목조건축 관련 법률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에 대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4)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 4.)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건물 부문은 동 기간 32.8% 감축)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본칙(총칙·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목조건축의 활성화 지원·건축용 목재제품·보칙 및 벌칙) 총 6장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대한 입법목적 규정
제2조	(정의)	- 목조건축, 목조건축물, 목조주택 등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
제2장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제5조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 등의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 수립 의무 등
제6조	(목조건축 정책협의체의 설치)	-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목조건축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	(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 목조건축지원센터의 설치·지원 등 규정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 목조건축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목조건축 기술개발의 촉진 및 기술기준 혁신)	- 다양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
제10조	(전문인력양성)	- 목조건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책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조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	-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12조	(목조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향상)	- 목조건축물 공사감리자, 설계자의 전문교육 수료 의무 등 규정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3조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 등에 적용중인 특례 일부 준용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제14조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	- 목재이용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업무의 위탁 등
제3장 목조건축의 활성화 지원		
제15조	(공공건축에서의 목조건축 활성화 등)	-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정 비율을 국산 목재로 구매
제16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 조성)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지정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제17조	(목조건축물 조성사업 등)	- 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
제18조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목조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	(목조주택)	- 목조주택 건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제도 개선 및 공사 등에 필요한 업무지침 마련
제20조	(목조주택의 표준설계도)	-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 및 고시
제4장 건축용 목재제품		
제21조	(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	- 모든 건축물에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
제22조	(건축용 목재제품의 표준화)	- 건축용 목재제품의 두께, 너비 등 표준화 및 고시
제23조	(건축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 건축용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목조건축지원센터 등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
제25조	(목조건축 관련 자료의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관련된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제26조	(조세의 감면)	-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벌칙 적용 시 목조건축지원센터의 임직원 등, 공사감리자, 건설기술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감리자 또는 설계자,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 등 처벌
제29조	(양벌규정)	- 위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등에도 벌금형 부과
부 칙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주요 내용 검토

이하에서는 개별 조항 중 중요 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가. 총칙(제1장) 관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u> 및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목조건축</u>”이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u>주요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건축용 목재제품으로 건축하는 방식</u>을 말한다. 2. “목조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제1호에 따른 목조건축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하며, 제3호의 “목조주택”을 포함한다. 3. “목조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목조건축을 적용한 주택을 말한다. 4. “건축용 목재제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건축물의 구조용 또는 마감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5. “공공건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 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공공건축물에 건축용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목조건축과 건축용 목재제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주택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목조건축물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에 해당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정안 제1장은 이 법의 목적과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조는 “목조건축”, “목조건축물”, “목조주택” 등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으로, 이 법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목조건축”에 대해 “주요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건축용 목재제품으로 건축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2조제1항제5호의 “공공건축”은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아우르는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⁵⁾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3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외에 규제 완화를 규정하는 것은 목조건축물 품질 하락 및 국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임.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제2장) 관련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 정 안
제6조(목조건축 정책협의체의 설치) ① <u>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국토부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협의 등 목조건축과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목조건축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추천인사 10명과 산림청 추천인사 10명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 협의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목조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목조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 2.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목조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연구 3. 목재제품 산업 육성과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목조건축 및 목재제품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목조건축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6.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목재 이용 활성화 및 목조건축 지원사업

제 정 안

7. 목조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 및 탄소저장 효과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목조건축 및 목재제품 관련 출판·홍보 사업
9. 기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리모델링 관련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목조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향상) ① 목조건축물을 공사감리하는 공사감리자와 설계하는 설계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
료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목조주택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는 공사감리자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목조건축물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목조건축물인 경우, 건축주 또는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배치한 건설기술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⑤ 목조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목조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목구조물 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 ① 산림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제 정 안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현황조사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 수립, 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목조건축 관련 전문인력양성 등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목조건축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목조건축과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산림청의 업무가 다음과 같고(아래 표 참조), 대형화·고층화 등 새로운 개념의 목조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유관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리주체 간 협의 및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구 분	주요 내용
공통 (국토교통부, 산림청)	▶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의 수립 ▶ 목조건축 정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 목조건축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 ▶ 목조건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전문 교육기관 지원 ▶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 시범사업 등 추진, 지원
국토교통부	▶ 목조주택의 표준설계도 고시 ▶ 목조건축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전문인력 관리
산림청	▶ 목조주택의 표준설계도 제작 ▶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 실시 ▶ 건축용 목재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목재의 생산·가공 단계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⁶⁾를 활용⁷⁾하거나 국

6)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가건축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⁸⁾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정책협의체 구성 관련 유사 입법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7)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의 정책 심의 및 건축정책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상이하므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안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목조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립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등의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지원센터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제도의 연구, 정보·데이터 관리 및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할 지원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한편, 안 제7조는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안 제7조제5항 중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3항에 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7조(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지원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는 목조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및 설계자가 수료해야 할 필수 교육 및 목조건축물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 목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9)에 따라 목구조물 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목조건축물은 주로 소형 목조주택이므로, 건축 전문인력 대부분은 철근 콘크리트·강구조 건축물 등에 익숙한 실정임. 따라서, 목조건축물 품질 및 성능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에 교육 수료 의무를 부여하는 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목조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및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려는 것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첫째, 안 제12조제1항은 목조건축물의 공사감리자와 설계자에게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자격 체계에서 이미 목구조에 관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연간 1만 1천여 건의 목조건축물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에게 의무적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¹⁰⁾이 있음.

【 최근 5년간 건축물 착공 현황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94,947동	185,640동	185,841동	153,205동	115,783동
목조	10,011동	10,102동	10,897동	9,503동	7,110동
목조 비율	5.14%	5.44%	5.86%	6.20%	6.14%

※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연도별 건축물착공현황)

둘째, 안 제12조제2항은 건축신고 대상 목조주택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리자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이하 “목구조기술자”라 함)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사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¹¹⁾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로서 그 자격

10)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건축사에게 별도의 추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11)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목구조기술자에게 감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목조건축물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목조건축물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을 목구조기술자 또는 안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기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물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 ①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② 안 제10조에 따른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기술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추가로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갖추거나, 안 제10조에 따른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자로 규정하도록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12조(목조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향상) ① ~ ② (생략)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목조건축물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목조건축물인 경우, 건축주 또는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배치한 건설기술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제12조(목조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향상) ① ~ ② (생략)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목조건축물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목조건축물인 경우, 건축주 또는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배치한 건설기술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넷째, 안 제12조제5항은 목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목구조물 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대한 시공은 공사의 내용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업종 중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반면,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중 ‘목구조물 공사업’은 아직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제정안에서는 제외할 필요(안 제12조제5항 삭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의 업종은 공종간 연계성·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목구조물 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안 제12조제5항은 “목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목구조물 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구조부 등”에서 “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4조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목재이용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현황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기초자료 및 통계 관리의 필요성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현황조사 실시 및 자료, 정보의 제공 요청 등을 규정한 제정안의 내용

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황조사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¹²⁾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외에 안 제7조의 “지원센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목조건축 활성화 지원(제3장) 관련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 정 안

제15조(공공건축에서의 목조건축 활성화 등)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목조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등은 발주하는 공동주택 연면적의 일부분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저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목조건축물을 건축할 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6조(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과 도시 기반 조성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지역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이하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 조성 시에 기술지원 및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그 밖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국가기관등은 목조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목조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목조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기관등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범사업의 수행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3장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목조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목조건축물 조성사업 및 조성 시범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은 국가기관 등이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목조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위는 국내외에서 목조건축물로 건축된 사례¹³⁾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를 삭제하여 공공건축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5조제2항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일부분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국민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층간소음 및 내화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여 적용중이므로 향후 목조건축 기술이 향상된 이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안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과 도시 기반 조성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지역을 목조건축 도시 또는 마을로 지정할 수 있고, 기술지원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13) 목조건축물 건축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진주시 판문동 소힘겨루기 경기장
- 의료시설: (일본) 다케나카병원, 이마이병원
- 교육연구시설: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 노유자시설: 진주시 홍락원 등 주민센터 및 경로당
- 운동시설, 수련시설: 경북 예천스타디움, 서울시립대 강촌수련원

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목조건축물 조성을 넘어 마을·도시 단위로의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목조건축도시 및 마을을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10개소, ~2026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찬성하는 입장임(참고자료 4 참조).

안 제18조는 목조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및 신규 목조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목조건축물 조성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8조의 내용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시범사업 실시 유사 입법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 건축용 목재제품(제4장) 관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 정 안
제21조(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 ① <u>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u> 국가 탄소중립 기여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u>모든 건축물에 목재로 제작된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u>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4조의 현황조사에 따라 건축용 목재제품의 연간 사용량을 파악하고 사용량의 추이와 증감의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건축용 목재제품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용 목재제품의 표준화) ① <u>산림청장은</u> 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성, 대체성, 이용률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u>건축용 목재제품의 두께, 너비, 길이 등에 대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u>하여야 한다. ② 건축용 목재제품 표준화에 필요한 제품과 표준화의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건축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u>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이 균일한 품질을 확보</u>할 수 있도록 <u>공장에서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u>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4장은 건축용 목재제품(건축물의 구조용 또는 마감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활성화·표준화·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임.

안 제21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모든 건축물에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고, 현황조사에 따른 분석을 기반으로 건축용 목재제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라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이해됨.

안 제22조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두께·너비·길이 등을 표준화하고 산림청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자재 대량생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안 제23조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균일한 품질 확보하기 위해 건축용 목재제품을 공장에서 생산·가공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국토교통부는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의 내용에 대해 목조건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임.

마. 보칙(제5장) 관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 정 안
제25조(목조건축 관련 자료의 요청) ① <u>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와 목재제품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목조건축 관계자에게 목조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청</u>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내용과 제출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세의 감면)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u>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임직원 및 운영위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제정안 제5장은 보칙으로 목조건축 관련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자료 제출 요청 권한 부여, 조세의 감면,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5조는 목조건축 활성화와 목재제품 이용률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국가기관과 목조건축 관계자 등에게 목조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부재하면, 자료제출 등에 있어 관계자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자료제출 관련 유사 입법례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이하 생략)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 ② (생략) ③ <u>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이하 생략)

안 제2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4)에 따르면 세법에서만 조세감면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선언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실익이 없으며,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조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일반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27조는 목조건축 관련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¹⁵⁾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¹⁶⁾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안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임직원 및 운영위원과 안 제12조제1항에 따른 목조건축물 공사감리자 및 안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목조건축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지원센터의 임직원 및 운영위원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의 연구, 목재제품 표준화

15)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보급 지원 등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현행 「건축법」 제105조¹⁷⁾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등에게도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는 건설사업자의 의무라는 점과 「건축법」 제105조에서 건설기술인¹⁸⁾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인을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 위원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을 대신하므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18)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목조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향상)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목조건축물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입법례 】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의2.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바. 벌칙(제6장) 관련(안 제28조 및 제29조)

제 정 안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을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감리자 또는 설계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건설기술인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안 제28조는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공사감리자, 설계자, 건설기술인과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목조건축물 활성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목조건축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정확한 자료·통계에 기반한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는 자와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19)에 따라

19)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의무이므로, 처벌대상에서 건설기술인을 제외하고 건설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제정안 심사 시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9호²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제정안의 벌칙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5

20)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참고 1

목조건축 개요 및 장점 [자료: 산림청]

□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 목조건축 1동(30평, 100m²)은 이산화탄소 40톤 감축 효과*
* 자동차 1대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에 해당
- 목재는 동일 부피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가 알루미늄 대비 1/791, 철강 대비 1/191로 에너지 절감형, 탄소중립 소재
- 목재는 화석연료와 달리 산림자원순환경영(조림-성장-수확-이용-조림)을 통해 탄소를 흡수, 저장하며 사용되는 지속가능한 자원

□ 재료적 우수성

- 목재는 비강도(재료의 밀도 대비 강도)가 높아, 같은 무게 시 철근, 콘크리트 등 타 소재 대비 강도가 400배까지 높으며 지진 등에도 강함
* 무게 대비 인장강도(kg/cm²) : 목재 2,250, 철 509, 콘크리트 10
무게 대비 압축강도(kg/cm²) : 목재 950, 철 445, 콘크리트 100
무게 대비 휨강도(kg/cm²) : 목재 2,800, 철 182, 콘크리트 7
- 목재는 단열성능이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로 냉난방비가 적게 소요되는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하며, 화재 시에는 표면이 '탄화'되면서 내부로의 공기와 열전달을 차단하여 화재에 견디는 구조성능 우수
- 모듈러 공법 등 공장제작-현장조립(OSC, Off-site Construction) 공법에 매우 적합하여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절감에 효과
* 공사기간 20~50%까지 단축 가능(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2022)

□ 인체친화적 소재

- 정서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저감, 아토피·천식·우울증 등 개선 효과
* 스트레스는 콘크리트 대비 65% 저감 / 아토피 40~50%, 천식 10%, 염증 50% 효과

□ **일본**

- 「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1년) *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10년) 개정
 - 법률 및 기본방침의 대상을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 관계부처 협동 ‘목재이용 촉진본부’ 설치 * 국토교통부, 환경성 등
-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21) 마련
 -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용·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목조화(구조재) 및 목질화(내장재 등) 추진
 - 민간 대상으로 건축물의 목재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최대 2억엔 보조(20층 이상 고층 건물은 4억엔까지 지원)

□ **캐나다**

- 목재를 통한 녹색 건설(GCWood, Green Construction through Wood)('18)
 - 고층 목재건물, 목재교량 등에 대한 인식 및 사용량 증대, 설계 등 지원
- BC주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 제정('09년)
 -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목재를 주요 자재로 사용하도록 규정

□ **미국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18)**

- 혁신적인 목재제품이 미국의 목조건축물에 더욱 많이 사용되도록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교육 및 기술적 지원 제공
 - ‘목재혁신 보조금 프로그램(Wood Innovation Grant Program)’ 운영
 - 다양한 규모·형태의 목조건축 설계·조성, 건축용 목재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 * '21년 목재혁신 보조금 프로그램 : 약 153억원 규모, 50개 프로그램 지원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Green Deal Timber Construction) '25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20% 이상 목재 혹은 기타 바이오 기반 재료로 건축하도록 의무화
- 원활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상 관련 연구개발 지원

□ 뉴질랜드

- '목재 우선 정책 및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 모든 공공건축 프로젝트에서 목재를 주재료 사용 요구(자금지원 받는 4층 이하 건물 의무화)
- * 상업용 및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 시 인센티브 지급, 목재 관련 연구센터 설치 등

□ 프랑스

- '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France Bois 2024'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물의 목조화 추진(자국 목재 사용 비율 50% 이상 목표)
- * 올림픽 선수촌(8층 이하는 나무와 유리만 사용, 그 이상은 철골 지지), 상 드 마르스 아레나(레슬링 경기장, pre-fab 모듈러 건축, 해체 이후 재활용) 등

□ EU 신산림전략(New EU Forest Strategy for 2030, '21.7)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목재이용(Cascading Use)에 따라 목재이용을 최적화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우선 사용
- 특히, 목재의 핵심적인 역할은 건설·건축재로 이용함으로써 대표적 탄소배출원인 건설부문을 탄소흡수원으로 전환하는 것

참고 3

목조건축 구성에 따른 목재 소요량 및 가격 [자료: 국토교통부]

가. 목조건축 공사비 비교

- 공공건축물 구조별 공사비 분석 시,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비해 목구조를 적용할 경우 약 11%의 공사비 차이가 발생('18)

<공공건축물 구조별 공사비>

구조 형태(사례수)	평균 공사비(천원/m ²)	평당 공사비(천원/평)	철근콘크리트 대비 비율(%)
철근콘크리트(27)	2,148	7,088	100.0
철근콘크리트+철골(4)	1,836	6,059	85.5
철근콘크리트+목구조(3)	2,378	7,846	110.7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2014~2017) 및 한그린 목조관 공사비 참고

<(추가사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강릉) 구조별 공사비('22)>

구조 형태	철근콘크리트	목구조	철근콘크리트 대비 비율(%)
평당 공사비(천원/m ²)	2,210	2,460	113.0

나. 구조재 이용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제품의 종류
 - 구조용 집성재, CLT(구조용직교집성판) / (수종) 낙엽송, 소나무 등

- 단위면적당 구조용 목재제품 사용량 : 약 0.13 m³/m²

* 국내 목조건축 사례(한그린 목조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동) 참고

다. 내장재 이용

- 건축물 내장재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종류
 - 목질바닥재(합판·강화마루), 천장재(합판), 벽판재, 목섬유 단열재 등

- 단위면적당 목재제품 사용량 : 약 0.167m³/m²

* 벽, 바닥, 천장, 단열에 목재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양 (20평 기준)

참고 4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 개요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도시 내 건축, 거리 등을 지역 목재로 조성·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저장 확대 기여하는 사업

<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표 >

- **경제** 지역 일자리 창출, 목재산업 밸류체인 구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사회** 생애주기 목재교육 프로그램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목재문화 확산
- **환경** 도시 내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저장 증진 → 탄소중립 도시 전환

□ 주요 사업내용

구분	세부 내용
가로경관개선	- 목재특화거리 조성 (벤치, 가로등, 방음벽, 버스정류장, 가드레일, 안내판, 어린이 놀이시설, 데크로드, 휴게공간 등을 지역목재로 전환) - 도시숲 · 정원 내 목재경관 조성, 지역 역사·문화 연계 등
목재문화증진	- 공공형 시민 목공체험센터 등 목재교육 기반시설 조성 - 생애주기별 목재교육 ·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거환경개선	- 지역 목재 활용 목조건축물 조성 - 목재 기반 생활 SOC 조성, 목조 공공주택 조성 ·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목재 이용제품 생산기반 강화 * 시설, 인력, 유통 등(원목생산, 목재가공, 최종제품 등)



< 충북 청주 목재친화도시 조감도(안) >